질 문

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한 대가로 지급한 경품, 상품권에 대한 기타소득 처리 시 필요경비(80%)를 인정하지 않고 처리(원천징수 22%)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답 변

■ 경진대회 경품(상품권 포함)에 대한 기타소득 처리 시 필요경비(80%)를 인정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<소득세법 시행령 87조>

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 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

1.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

위 적용을 받으려면 주관기관이 협조하고, 시상 지원하기로 한 경우라면 필요경비 80%가 인정되고, 경진대회와 무관하게 받은 국고를 활용해서 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필요경비 80%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2.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

위 적용을 받으려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지만,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의 순위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<mark>우리대학교 재학생</mark>으로 제한된 경진대회의 경우 필요경비 80%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■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<질문42>와 관련하여 공문 발송 시 첨부하면 필요경비 (80%)를 인정 하여 기타소득 처리됩니다.